

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시행세칙

2022. 09. 01. 제정

<학사팀>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101조의3에 따라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‘마이크로디그리’란 세분화된 전문 분야 교육과 다양한 융·복합 교육을 위한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을 말한다.

② ‘마이크로디그리 주관부서’(이하 ‘주관부서’라 한다.)란 마이크로디그리를 설계하고 운영·관리하는 대학, 학과(부) 또는 교내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개설) ① 마이크로디그리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.

② 마이크로디그리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, 학과(부) 또는 교내 기관은 교무처가 정하는 기간에 개설 심의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다.

③ 대학, 학과(부) 외에 마이크로디그리를 개설할 수 있는 교내 기관은 [별표 1]과 같다.

④ 마이크로디그리 개설 현황은 [별표 2]와 같다.

제4조(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) 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·운영한다.

②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류의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.

1. 본교에서 개설한 전공 또는 교양 교과목

2. 협약을 통해 본교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타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

③ 교과목은 최소 12학점 이상으로 편성하며, 기 개설된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이수학점) ① 이수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각 주관부서에서 정하되, 12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② 마이크로디그리 개설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, 하나의 교과목이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디그리에 편성된 경우 취득학점 중복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6조(이수인정) ① 주관부서에서 정한 교육과정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해당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.

②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디그리를 중복 이수할 수 있다.

③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인정을 희망하는 재적생은 이수자격을 충족한 이후 졸업사정 전까지 교무처에서 정한 기간에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인정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.

④ 이수가 인정되는 경우 [별지서식 1]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을 발급한다.

제7조(개편 및 폐지) ① 마이크로디그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.

② 마이크로디그리를 폐지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.

제8조(국제동·하계대학 전문과정에 대한 특칙) 국제동·하계대학에서 운영하는 전문과정(ISC/IWC Microdegree)의 개설, 이수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.